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90

발의연월일: 2024. 10. 21.

발 의 자:조정훈·최수진·김대식

서명옥 · 서지영 · 김용태

박준태 • 인요한 • 박충권

유상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감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외에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정당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기반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정책의 중립성이나 일관성 확보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 교육감직선제를 채택한 현행제도 하에서는 시·도지사보다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할 실익이 높지 않아 교육감 선거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지방 교육정책 추진상 중립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 · 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 ---사람이어야----. 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 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 <삭 제> 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 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 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 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

- 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 으로 근무한 경력
-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 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